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Q1. 제4조 2항의 15평점은 연수교육만 입니까? 학술대회도 포함됩니까?

⇒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15평점 이상의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개설 후 평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분과전문의 연수교육만 해당되고 학술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평점 신청을 누락하였습니다.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기관에서 관련 공문을 제출할 경우, 제7조(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항, 제12조(제재) 제3항에 따라 분과관리위원회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질의응답

Q1. 개업을 하다가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내과전문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제9조(겸직 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군복무 중 정규수련을 마칠 수 있나요?

⇒ 제11조(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제2항 관계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국군통합병원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전임의 수련은 제9조(겸직 금지)에 의거 국방의무로 복무 중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국방의무가 아닌 장기 복무 시에는 인정됩니다.

Q3. 내과분과전임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수련기간 이외 기간도 수련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제4조(수련기간) 제2항에 전임의 수련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득이 3월 1일 후에 이전에 전임의 수련을 개시할 경우, 수련개시 지연사유와 수련기간(1년, 소화기분과는 2년) 증빙자료(임용계약서 등)가 포함된 공문을 받아 분과관리위원회 검토 후 사안(병가로 인한 추가 수련 등)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질의응답

Q1.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시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 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개 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2개 이상의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제6조(수련) 제6항에 따라 1개 분과의 전임의 수련, 실무 종사를 충족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타 분과 전임의 수련, 실무 종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분과의 전임의 수련 및 실무기간에 타 분과 전임의 수련은 불가합니다. 또한,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시자격) 제3항에 따라 분과전임의 수련 및 실무기간에 타 분과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2. 소화기분과의 전임의 수련기간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제6조(수련) 제2항에 따라 내과전공의 3년제 수련자에 한하여 전임의 수련기간은 2년입니다. (내과전공의 4년제 수련자: 기존과 같이 전임의 수련기간 1년)

Q3. 수련병원에서 분과전임의 수련기간 중 4개월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분원에서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수련 1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제6조(수련)에 따라 전임의 수련기간 중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신 경우, 전임의 수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과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수련병원 교육지도자가 장기 해외연수나 근무처 이동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 전임의의 수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4.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시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기간은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기간은 해당 수련병원의 규정에 따라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단, 전임의 수련은 1년의 수련기간이 기재된 분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발급 시 인정됩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질의응답

Q1. 1994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1년 뒤 재검을 받아 1995년 2월 군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4월에 제대하여 신생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 전임강사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군 제대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1년 및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전공의 3년제 수련자: 소화기분과 전임의 수련기간 2년)

Q2. 2020년 2월에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대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내과분과전임의 수련(1년 또는 2년) 후 군대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의무 군복무 기간도 실무 종사로 인정되므로 군 복무 종료 후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Q3. 2020년에 내과전문의 취득 후 내과분과전임의 수련(1년 또는 2년)을 받고, 다음 해 3월부터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해외연수가 실무로 인정되어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 해외 연수기간도 실무종사에 해당되어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무 종사 기간 동안 임상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학위과정 및 연구직 등에만 종사할 경우 실무 종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현재 수련병원에서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도 취득하고 싶은데, 2개 분과전문의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이수하고, 1년 이상 해당 분과 실무에 종사하여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2개 이상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5.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논문 제출 시 Letter, 임상화보 등도 논문으로 인정되는지요?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시에는 수련개시일로부터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총 1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규정집에 명시(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된 학술지(원저, 증례, 종설)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이 인정됩니다. 단, 원저, 증례, 종설 외에 논문형식(method, results, discussion, reference 등)을 갖출 경우,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6. 학술대회 초록 제1발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초록집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와 수록된 초록 사본을 제출받아 응시자의 제1발표자 여부(성명 맨 앞 표기 또는 별표나 밑줄 표시)를 확인합니다.
단, 초록 사본에 학회명, 일자, 장소가 명기된 경우 초록집 표지 없이 초록 사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질의응답

Q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시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만 60세 이상 회원이 자격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자격이 만료되는 해에 만 60세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갱신 신청기간에 온라인 자격갱신 신청서(별지 제13호)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평점 취득 및 갱신 관련 의무 면제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에 만 60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 예시: 자격 만료연도에 만 59세 자격갱신 대상자가 다음 해에 자격갱신을 신청할 경우, 최근 5년간 100평점의 자격갱신 조건을 충족한 신청서 접수, 통과 시 자격 유지 가능)

Q2. 내과분과전문의 추가 자격갱신 신청기간에도 자격이 인정되나요?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은 기 부여된 인정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며,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제7조(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에 명기된 추가 자격갱신 신청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자격갱신 시 논문 평점 계산 방법은?

⇒ 논문 평점은 별표2(논문평점 인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평점
원저	• 1저자 또는 교신저자: 10평점 • 공저자: 4평점
종설 및 증례보고 • 원저, 증례, 종설 외 형식 (분과관리위원회 인정 논문)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
예1) 1저자 논문인 경우 • 원저: 10평점 • 종설 및 증례: 원저 평점의 50%인 5평점 인정 • 원저, 증례, 종설 외 형식의 분과관리위원회 인정 논문: 원저 평점의 50%인 5평점 인정 **예2) 공저자 논문인 경우** • 원저: 4평점 • 종설 및 증례: 원저 평점의 50%인 2평점 인정 • 원저, 증례, 종설 외 형식의 분과관리위원회 인정 논문: 원저 평점의 50%인 2평점 인정	

*** 별표 2(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SCI, SCI(E)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